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등〉

-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08호)
-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55호)
-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84호)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156호)
-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169호)
- 김상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31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개 요	1
【배준영(Ⅰ)의원안】	1
【배준영(Ⅱ)의원안】	2
【배준영(Ⅲ)의원안】	3
【서영교의원안】	4
【배준영(Ⅳ)의원안】	5
【김상욱의원안】	6
II . 검토의견	7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연장(서영교의원안 제59조)	7
2.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연장(서영교의원안 제60조)	14
3.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연장(배준영Ⅱ의원안 제63조)	20
4. 노후경유화물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김상욱의원안 제66조의3) ...	30
5.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 연장(배준영Ⅳ의원안 제72조)	39
6.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배준영Ⅲ의원안 제85조의2)	44
7. 정당에 대한 감면 연장(배준영Ⅰ의원안 제89조)	54
8.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연장(배준영Ⅰ의원안 제90조)	59

I. 개 요

【배준영(I)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8. 6.

다. 회 부 일 : 2025. 8. 7.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지원해 민주주의 원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최근 심화되어 가는 인구감소, 나아가 지역소멸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주민자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및 제90조).

【배준영(Ⅱ)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8. 8.

다. 회 부 일 : 2025. 8. 9.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경감, 국가철도공단 및 도시철도공사가 취득하는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음.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이 일몰기한으로 곧 종료될 예정인데, 현재 철도망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방과 서울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 지원을 위한 부동산 및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의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 63조).

【배준영(Ⅲ)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8. 11.

다. 회 부 일 : 2025. 8. 12.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 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 왔음. 그러나 여전히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 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지방공기업의 사업과 설비에 대한 투자 역시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서영교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5. 8. 13.

다. 회 부 일 : 2025. 8. 14.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기업구조·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 관련 다수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전통시장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등이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여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0조).

【배준영(Ⅳ)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8. 14.

다. 회 부 일 : 2025. 8. 18.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면제 등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별정우체국이 우체국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우정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실제로 읍·면 단위 지역의 우정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을 고려하면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별정우체국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면제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2항).

【김상욱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상욱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8. 27.

다. 회 부 일 : 2025. 8. 28.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신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 1대당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00만원을 한도로 한시적으로 감면하여준 바 있음.

한편, 소상공인과 농어민, 용달·택배·개인화물자동차 등 생계형 화물차주(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함)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후된 경유화물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 노후된 경유화물차의 매연으로 인하여 대기환경이 오염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등이 노후된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소상공인등의 차량 교체 부담을 줄여 서민경제 및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노후된 경유화물차의 퇴출을 유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신설).

II. 검토의견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연장(서영교의원안 제59조)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함)에 따른 협동화¹⁾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²⁾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분의 25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제59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u>2027년 12월 31일</u> ----- -----.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② -----

1) “**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①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거나, ②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③제품 및 상표의 개발과 원자재 구입 및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을 의미함(「중소기업진흥법」 제2조제6호)

2) 「중소기업진흥법」

제28조(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의 고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집단화와 시설공동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협동화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7년 12월

31일

[illegible]

하기 위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실시하는 협동화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서영교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서영교의원안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 대한 감면 (§59①②)	감면 대상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① 교육시설용 부동산 ② 중소기업자 분양·임대목적 부동산	
	감면 내용	① 취득세 25% ② 취득세 50%, 재산세 50%	
	일몰 기한	~2025년	~2027년
협동화계획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59③)	감면 대상자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협동화실천계획 사용 목적 공장용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 50%, 3년간 재산세 50%	
	일몰 기한	~2025년	~2027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교육 인프라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연수원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⁵⁾, 협동화실천계획을 통해 중소기업의 상호협력과 공동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례의 효과성⁶⁾,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⁷⁾,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7,500만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4,900만원이며, 동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4,700만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460만원임.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경기(안산), 호남(광주), 대구경북(경산), 부산경남(창원), 강원(태백), 충청(천안) 권역에 총 6개의 전문연수원을 운영중이며, 현재 전북과 전남에 각각 별도의 연수원을 건립 중임.

6) 한편, 최근 3년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실적과 동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실적이 부재함.

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감면 현황(제59조제1항 및 제2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2	181,324	43	47,980
2022	1	46,172	38	52,135
2023	-	-	36	46,811

<협동화계획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현황(제59조제3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6	61,982	18	4,921
2022	2	16,921	14	2,528
2023	2	60,859	19	6,433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교육시설용 부동산의 경우 최근 3년간 취득이 없어 감면 실적이 미미하다는 점, 해당 교육이 대부분 유로로 운영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감면 종료が 필요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분양·임대하는 부동산 또한 최근 신규 입지지원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10년간 부동산 취득 실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감면 종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협동화실천계획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또한 협동화사업에 대한 감면이 82년에 도입되어 43년간 이루어진 점, 이와 별도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창업·성장 등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최근 협동화 사업은 생산시설의 집단화·공동화가 아니라 기술·연구개발 등 협업화 사업 비중이 높아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적어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감면 종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최근 5개년 협동화 자금지원 추이>

(단위 : 건)

구 분	'13년 前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집단화	687	12	5	7	2	1	2	3	5	2	2	1	729
공동화	120	5	3	1	1	0	1	4	4	0	2	2	143
협업화	221	8	15	6	5	1	7	41	60	46	59	44	513
합 계	1,028	25	23	14	8	2	10	48	69	48	63	47	1,385

※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연장(서영교의원안 제60조)

개정안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②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중소기업⁹⁾에 대하여 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이하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라고 함)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및 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 ----- ----- ----- ----- -----2027년 12월 31일-----

- 8)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위해 자율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그 종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4가지로 구분됨(「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조, 제3조 및 제4조).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①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② 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에 관한 기획과 조정 및 중소기업 외의 자가 그 조합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③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등의 업무를 수행함(동법 제35조제1항각호 참조)
- 9) “지역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 제외) 중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의미함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¹⁰⁾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③ (생략)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
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
· 산업기술·무역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¹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
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삭제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27년 12월 31일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2월 31일-----.

1. ~ 3.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¹²⁾을 위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면서, 전통시장의 상인 및 슈퍼마켓 또는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 감면율을 100분의 75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역중소기업 지역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음.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3(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또는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 정보 등의 제공
2. 종합기술 지도 및 연수 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지역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운영
6.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① 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개정안은 동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개별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지역 내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서영교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서영교의원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60①)	감면 대상자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 목적 취득 공동시설용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 50% (전통시장 상인·슈퍼마켓 사업자 등 75%)	
	일몰 기한	<u>~2025년</u>	<u>~2027년</u>
지역중소기업 지역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60④)	감면 대상자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고유목적 사용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 50%, 재산세 50%	
	일몰 기한	<u>~2025년</u>	<u>~2027년</u>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사업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 지역중소기업 중

합지원센터¹³⁾는 비영리기관으로서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산업·경영·무역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례의 효과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¹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4억원이며, 제60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600만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억 2,000만원임.

13)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2025년 10월 기준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총 15개소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소재하여 있음.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예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현황(제60조제1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6	108,4641
2022	4	114,926
2023	2	3,783

<지역중소기업 지역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현황(제60조제4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1	184	47	109,321
2022	-	-	47	116,889
2023	3	18,355	49	137,322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지방중소기업센터는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비영리기관으로 기업경영·일자리 창출·창업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나, 일몰기한은 3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연장(배준영Ⅱ의원안 제63조)

개정안은 ① 국가철도공단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철도차량과 부동산, ② 한국철도공사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철도차량, ③ 도시철도공사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철도차량 및 법인등기·구분지상권설정등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u>2028년 12월 31일</u> -----.
② 국가철도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¹⁵⁾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② ----- ----- ----- ----- ----- ----- <u>2028년 12월 31일</u>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사업시행자가 국가철도공단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같은 호의 사업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사업(이하 이항에서 "해당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

1.·2. (현행과 같음)

③ -----

-----20
28년 12월 31일-----
-----.

1.·2. (현행과 같음)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철도사업법」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④ (생략)

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이하 이 항에서 “도시철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도시철도공사의 범인등기 및 구분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

④ (현행과 같음)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하는 경우에는 그 읍)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3. 도시철도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읍)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용¹⁶⁾¹⁷⁾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15)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등”이라 함)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 것으로 조건으로 취득하는 철도차량¹⁸⁾과 철도건설사업·고속철도고속사업의 실시 이후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¹⁹⁾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면제하고 있음(제1항 및 제2항).

또한, 한국철도공사가 특정 사업²⁰⁾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의 100분의 50을, 준고속·일반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고속철도차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있으며²¹⁾(제4항), 도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 마목 및 바목은 제외됨

18) “**철도차량**”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 객차, 화차 및 특수차를 의미함(「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1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①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철도공단인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유치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철도공단법**」

제24조(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 국가는 제7조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과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 “자산”이라 한다)와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이하 “부채”라 한다)를 각 사업이 끝나는 때에 포괄하여 승계한다. 다만, 공단이 국가로부터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국가가 승계하지 아니한다.

20) 이는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으로, ①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②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③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④ 철도역사 개발사업 등이 해당됨.

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사업²²⁾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철도차량과 도시철도공사의 법인등기·구분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²³⁾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고 있음(제5항).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비교>

(‘24년 기준, 단위: 억원)

구분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설립목적	철도시설의 건설·관리	철도 운영	도시철도 운영
법적 성격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지방공기업
법적 근거	「국가철도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지방공기업법」 및 지자체 조례
예산규모	120,913	101,981	69,011
영업이익	7,042	△1,114	△22,099
당기순이익	1,563	△5,167	△12,451

※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21) 참고로, 「철도사업법」 제4조의2는 철도차량을 고속철도차량, 준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으로 구분하고 있음.

22) “도시철도사업”이란 ①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인 도시철도건설사업, ②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과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에 관한 도시철도운송사업, ③ 도시철도부대사업을 의미함(「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부터제6호까지 및 제6호의2).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6(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법 제6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도시철도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철도 산업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립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배준영 II 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배준영 II 의원안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감면 (§63①·②)	감면 대상자	국가철도공단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① 철도시설용 부동산 ② 국가등 귀속용 부동산·철도차량	
	감면 내용	① 취득세 25% ②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최소납부세제 배제 ²⁴⁾)	
	일몰 기한	~2025년	~2028년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감면 (§63③)	감면 대상자	한국철도공사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① 사업용 부동산 ② 사업용 철도차량	
	감면 내용	① 취득세 2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② 취득세 50% (고속철도차량 25%)	
	일몰 기한	~2025년	~2028년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면 (§63⑤)	감면 대상자	도시철도공사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① 도시철도사업용 부동산·철도차량 ② 법인등기 및 구분권설정등기	
	감면 내용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등록면허세 100%* × 지자체 투자비율 *100%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일몰 기한	~2025년	~2028년

다만,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례의 효과성,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여건,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²⁵⁾.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2억 2,300만 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56억 7,500만원이며, 제63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53억 9,200만 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64억 4,300만원 이고, 제63조제5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2억 3,500만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69억 500만원, 등록면허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45억 8,000만원임.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제3항, 제77조제2항·제3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제5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감면 현황(제63조제1항 및 제2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33	192,453	340	5,882,509
2022	10	24,696	337	5,813,688
2023	17	452,410	350	5,330,328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감면 현황(제63조제3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104	3,836,119	1,781	6,375,415
2022	51	3,933,413	1,845	6,866,758
2023	88	8,409,190	1,801	6,089,568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면 현황(제63조제5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38	1,221,192	2,407	16,778,287	59	4,201,072
2022	54	1,006,034	2,428	18,003,530	54	5,913,419
2023	35	1,478,783	2,391	15,933,473	36	3,626,743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나, 국가 귀속 예정 부동산에 대한 감면 재설계²⁶⁾, 일몰기한 3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므로, 추후 이와 병합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가철도공단은 공단이 철도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및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므로 공단의 취득 행위는 형식적 취득의 성격을 보인다는 점, 고속·일반철도 및 광역철도를 건설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일정부분 발생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경우 사실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임.

26) 구체적으로,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 예정인 부동산 등에 대해 무상사용권 등 반대급부 유무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화 하고, 목적세적 성격의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정비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4. 노후경유화물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김상욱의원안 제66조의3)

개정안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경유를 원료로 하는 화물자동차(이하 “노후경유화물차”라고 함)를 소유한 자가 노후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경유를 원료로 하지 않는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6조의3(노후경유화물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경유를 원료로 하는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노후경유화물차”라 한다)를 2026년 1월 1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가 노후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화물자동차[경유를 원료로 하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신조차(新造車)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조차”라 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노후경유화물차 1대당 신조차 1대만 취득세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 전액을,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2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를 원료로 하는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특례를 부여한 바 있음²⁷⁾.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 특례에 관한 사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2009년에도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한 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였고²⁸⁾,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2009년 약 26,000대 2017년 약 90,000대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졌음.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를 원료로 하는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노후경유자동차"라 한다)를 2017년 1월 1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가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신조차(신조차)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조차"라 한다]를 2017년 6월 30일까지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노후경유자동차 1대당 신조차 1대만 취득세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 전액을,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28)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671호, 2009.05.21. 개정·시행)

제120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2009년 4월 13일 이후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것으로서 신규등록되지 아니한 신조차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2조의2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서 각각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규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감면액 중 취득세 감면액이 28만원을 초과하면 28만원, 등록세 감면액이 7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④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을 적용한 승용자동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세제지원 연혁>

구 분	2009년 세제지원		2017년 세제지원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대상	1999.12.31.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 교체 후 신차 구매 시		2006.12.31.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 교체 후 신차 구매 시	
감면율	개소세 70% (상한 150만원)	취득·등록세 70% (상한 100만원)	개소세 70% (상한 143만원)	취득세 50% (상한 100만원)
기간	2009.5. ~ 12. (8개월)		2016.12.5. ~ 2017.6.	2017.1. ~ 6.
감면액	3,552억원	3,510억원	722억원	91억원

주) 2017년의 경우 국세는 승용차, 지방세는 승합·화물차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짐
 ※ 자료 : 행정안전부

<노후 경유차 교체 사업에 따른 초미세먼지 감축량>

구분	2009년	2017년
지원대수	25,919대	90,379대
단위저감량	13.788kg/대/년	
연간저감량	357톤	1,246톤

주) 단위저감량은 「운행경유차 등 저공해사업 중장기 추진방안 연구(한국환경연구원, '17.12)」 참조
 ※ 자료 : 기후환경에너지부

개정안은 노후경유화물차의 소유주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유한 노후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화물자동차 중 경유를 원료로 하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신조차(新造車)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 등의 차량 교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노후 경유화물차의 폐차를 유도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김상욱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김상욱의원안
노후경유화물차 교체에 대한 감면 신설 (\$66의3)	감면 대상자	<u><신 설></u>	노후경유화물차의 소유자
	감면 대상		노후경유화물차 폐차·말소등록 이후 취득한 화물자동차
	감면 내용		취득세 100% (감면한도 100만원)
	일몰 기한		~2026년

현재 노후경유차로 간주되는 배출가스 배출등급 4·5등급²⁹⁾ 노후경유차 등록대수가 약 88만대로 전체 경유화물차³⁰⁾의 약 28.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후경유화물차 교체 유인을 제공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29)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배출가스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음

30)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2025년 9월 기준 등록된 경유화물차는 총 309만 5,167대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25.9월 기준)>

(단위 : 대)

구 분	등록대수	비 고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 미조치)	171,627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배출가스 4등급	708,140	'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주 1) 등록대수는 보험가입 경유차 등록대수 기준

2)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2015.12.31. 이전 등록 차량에 대한 정보는 미보유(별도 확인 필요)

※ 자료 : 기후환경에너지부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³¹⁾ 또는 수소전기자동차³²⁾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른 감면특례가 이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정안은 감면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환경친화적 자동차³³⁾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또한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31) “전기자동차”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함(「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3호)

32) “수소전기자동차”는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함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6호)

33)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

보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개정안 비교 >

구분	현행		개정안
	전기자동차 (§66④)	수소전기자동차 (§66⑤)	
감면조건	전기자동차 취득	수소전기자동차 취득	노후경유자동차 폐차 후 화물자동차* 구입 * 경유 제외 모든 車
감면내용	취득세 면제 (감면한도 140만원)		취득세 50% (감면한도 100만원)
일몰기한	~2026년	~2027년	~2026년

둘째,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³⁴⁾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타 부처의 지원 사업과 감면특례가 중복되지는 않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4등급·5등급의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는 1,727억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요>

□ 목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노후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국비 50%, 지방비 50%)

□ 주요내용

- **(대상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Tier-1 이하의 엔진 탑재)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로 등록된 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에 따름)

- **(선정조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

※ 자료 : 기후환경에너지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통해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한정된 지방 재원 하에서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중심으로 지방세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 소상공인 등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생업활동용 소형 화물차량에 대해 더 낮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적용³⁵⁾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감면을 신설하는 것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친환경자동차 지원 현황>

재정(국가+지방)	국세(개별소비세)	지방세(취득세)	기타
전기차 최대 1,800만원 수소차 최대 3,75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전기·수소차 140만원	전기·수소차 주차장 통행료·전기요금 할인 등

※ 자료 : 행정안전부

35) 구체적으로, 취득세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 7%, 영업용 화물차 4%, 비영업용 화물차 5%가 적용되며, 자동차세의 경우 비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1,000kg 기준 28,500원이 부과되나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6,600원이 부과됨.

참고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2025년 기준)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50% (신차)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4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7,500cc 초과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굴착기	①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②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③33톤 이상		7,900						
지게차	①9톤 미만		1,050						
	②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③18톤 이상		12,000						

※ 자료 : 기후환경에너지부

5.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 연장(배준영Ⅳ의원안 제72조)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별정우체국³⁶⁾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피지정자”라고 함)가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① 「별정우체국법」 제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람(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지정인”이라 한다)이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같은 법 제4조 제2호 ³⁷⁾)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정우체국의 국장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피지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u>2025년 12월 31일</u> 까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	① ----- ----- ----- ----- ----- ----- ----- ----- ----- ----- ----- <u>2028년 12월 31일</u> ----- ----- ----- ----- -----.

36) “**별정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청사)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체신)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의미하며,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의 사무와 같은 사무를 관장함(「별정우체국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조).

_____.

1. ~ 3. (현행과 같음)

②

2028년 12월 31일

2028년 12월 31일

③ (현행과 같음)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피지정인
2.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피지정자가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2%p)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면제하며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도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Ⅳ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배준영Ⅳ의원안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 (§72①·②)	감면 대상자	피지정자 (별정우체국 지정 승계인 포함)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별정우체국 사업용 부동산 및 사업장	
	감면 내용	① 취득세율 2%p 경감 ②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③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100%	
	일몰 기한	~2025년	~2028년

38)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39) 「지방세법」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2024년 기준으로 별정우체국은 685국, 3,217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전국 우체국 중 27.2%를 차지하며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94.6%가 별정우체국으로 운영되고 있음⁴⁰⁾.

<연도별 별정우체국 현황>

(단위 : 국)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별정우체국 수	720	712	704	697	685
전체 우체국 수	2,606	2,577	2,563	2,533	2,515
별정우체국 비율	27.6%	27.6%	27.5%	27.5%	27.2%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정우체국은 읍·면 지역 등 행정서비스가 낙후된 지역에서 우체국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며 주로 지역주민을 채용하여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례의 효과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⁴¹⁾.

40) 또한, 별정우체국이 신설되는 사례는 없고, 기존 별정우체국을 짜녀·배우자에게 상속·증여하는 형식의 승계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임.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예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2,500만 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억 8,300만원, 주민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8,200만원임.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 현황(제72조)>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12	32,077	1,558	178,741	154	83,216
2022	16	33,641	1,571	192,240	118	89,141
2023	29	11,525	1,560	178,218	129	75,086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별정우체국이 읍·면 등 낙후된 지역에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나, 국가 공공기관 감면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취득세 감면율을 재설계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와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배준영Ⅲ의원안 제85조의2)

개정안은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2025년 12월 31일</u> (제4호의 경우에는 <u>2027년 12월 31일</u>)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u>2028년 12월 31일</u> ----- ----- <u>2030년 12월 31일</u> ----- -----.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1. ~ 5. (현행과 같음)
2. 삭제	

3.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호 및 제5호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 제4호를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단”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지방공단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2. 삭제

3. 지방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이하 이 항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

② -----

---2028년 12월 31일-----
-----.

1. ~ 3. (현행과 같음)

③ -----

-----2028년 12월 31일-----.

1. · 2. (현행과 같음)

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읍)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읍)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공사⁴²⁾가 그 설립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이하 “목적사업”이라 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⁴³⁾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⁴⁴⁾을 곱한

42)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으로 조달됨(「지방공기업법」 제49조부터 제57조의2까지)

43)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44) 이는 지방공사의 자본금에 대한 지자체의 출자금의 비율을 의미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①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비율: 지방공사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 다만,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

금액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있으며,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⁴⁵⁾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 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내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함)⁴⁶⁾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⁴⁷⁾하고 있음(제1항).

또한, 지방공단⁴⁸⁾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⁴⁹⁾을(제2항), 지방출자·출연기관⁵⁰⁾이

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45)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는 공용청사·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공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로 한다)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47)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48) “지방공단”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으로 조달되나, 지방공사와 달리 결산결과 손익금을 자체처리하지 않음(「지방공기업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지방공사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됨.

49)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⁵¹⁾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⁵²⁾을 곱한 금액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일괄적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방공사 등이 주로 수도·하수도·지방도로·주택사업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사무를 대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지속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50)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뒤 지정·고시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의미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조 및 제5조).

이때, “출자기관”은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이며, “출연기관”은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함.

51)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52) 이는 지방공사의 자본금에 대한 지자체의 출자금의 비율을 의미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①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 비율: 지방공사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 다만,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배준영 III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배준영 III의원안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85의2①)	감면 대상자	지방공사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① 목적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② 국가·지자체 무상 귀속 공공시설물등	
	감면 내용	① 취득세·재산세 50%(조례)×지자체 투자비율	
		② 재산세 100%(반대급부有 50%) (최소납부세제 배제 ⁵³⁾)	
	일몰 기한	① ~2025년	① ~2028년
		② ~2027년	② ~2030년
지방공단에 대한 감면 (§85의2②)	감면 대상자	지방공단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목적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재산세 100%(조례)	
	일몰 기한	~2025년	~2028년
지방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감면 (§85의2③)	감면 대상자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목적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재산세 50%(조례) × 지자체 투자비율	
	일몰 기한	~2025년	~2028년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감면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공사 등의 업무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례의 효과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⁵⁴⁾, 지방공사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임.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143억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44억원이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690만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4억 6,700만원 이고,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21억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4억 원임.

-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제3항, 제77조제2항·제3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제5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예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현황(제85조의2제1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4,677	134,673,743	2,802	14,702,362
2022	5,397	102,356,510	2,680	14,887,176
2023	4,934	105,727,238	2,695	13,560,771

<지방공단에 대한 감면 현황(제85조의2제2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10	8,719	66	454,503
2022	5	2,067	62	490,821
2023	16	10,036	68	456,896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면 현황(제85조의2제3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180	1,128,334	764	1,517,138
2022	541	2,782,189	599	1,294,486
2023	1,453	2,473,899	707	1,363,787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공기업 등의 고유업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방공기업 등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추정요건을 신설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추후 정부안과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 정당에 대한 감면 연장(배준영 I 의원안 제89조)

개정안은 정당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①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① ----- ----- ----- ----- <u>2028년 12월 31일</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정당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⁵⁵⁾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 ⁵⁶⁾ 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② ----- ----- ----- ----- ----- ----- ----- <u>2028년 12월 31일</u> ----- -----.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정당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⁵⁷⁾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u>2025년 12월 31일</u>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 -----. ③ ----- ----- ----- ----- ----- -----<u>2028년 12월 31일</u> -----. ----- -----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5)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56)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호 생략)

57) 「지방세법」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당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정당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I 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배준영 I 의원안
정당에 대한 감면 (§89①~③)	감면 대상자	정당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① 사업용 부동산 ② 사업용 면허 ③ 정당 사무소	
	감면 내용	①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 100% ② 등록면허세 100% ③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100%	
	일몰 기한	~2025년	~2028년

정당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통해 정당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정당정치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례의 효과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⁵⁸⁾.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실적은 없으며,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9,5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은 약 470만원, 등록면허세 감면액은 약 5만원, 주민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7,100만원임.

<정당에 대한 감면(제89조)>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	－	35	90,678
2022	－	－	35	101,394
2023	－	－	35	93,273

연도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12	5,024	2	61	32	69,629
2022	12	5,050	2	61	32	70,901
2023	11	3,963	1	34	31	72,222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정당설립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지방세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정부안⁵⁹⁾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정부안과 병합심사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9) 한편, 정부안의 경우 ① 재산세 감면대상에 선박 추가, ②주민세 감면 종료, ③추징 완화(신축시 토지 관련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 ④일몰기한 3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8.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연장(배준영 I 의원안 제90조)

개정안은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u>2028년 12월 31일</u>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60)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61)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62)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u>2025년 12월 31일까지</u>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② ----- ----- ----- ----- ----- ----- ----- <u>2028년 12월 31일</u> ----- -----. ----- ----- -----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함)⁶³⁾가 주민 공동소유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60)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61)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호 생략)

62) 「지방세법」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마을회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마을회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자치 강화와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배준영 I 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배준영 I 의원안
마을회등에 대한 감면 (§90)	감면 대상자	마을회등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① 주민 공동 소유 목적 부동산·선박	
		② 마을회등 소유 부동산	
		③ 마을회등의 사업소 등	
	감면 내용	① 취득세 100%	
		②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100%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100%	
		③ 주민세(사업소·종업원) 100%	
	일몰 기한	<u>~2025년</u>	<u>~2028년</u>

마을회등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서 공공복리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례의 효과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⁶⁴⁾.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22억 6,700만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99억 1,6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은 약 6억 8,100만원, 주민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억원임.

<마을회등에 대한 감면(제90조)>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1,528	2,376,250	98,235	9,869,920
2022	1,402	2,328,887	97,842	10,379,377
2023	1,115	2,098,169	97,580	9,500,989
연도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1	47,254	696,576	2,206	127,764
2022	47,076	716,701	1,700	89,995
2023	47,106	631,778	1,613	85,848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세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감면대상에 부동산 외 선박도 추가하지만, 현재 주민세의 경우 면세점⁶⁵⁾ 이하가 대부분으로 실제 감면 적용 사례가 적어 감면효과성을 고려하여 감면이 종료될 필요가 있으며,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7

65)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업소분의 경우 연면적 330㎡, 종업원분의 경우 종업원 월평균 급여액이 1억 8천만원 이하일 때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음.